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 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올려져 있다.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은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단품ES 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단품ES적용시기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단품의 가격이 입찰 당시에 비해 15% 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단품ES 후 총액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① 총액ES를 위한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ES 조정기준일부터 총액ES 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가격상승률은 합산하여 총

물가상승율이 3%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② 총액ES시 중복적인 물가조정은 지양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물가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하도급 분배도 용이하다.

### • 단품ES 적용 시기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시행일(2006.12.29)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 시행일('08.5.1) 현재 계약 이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예규 시행 전 종결된 계약은 단품ES신청이 불가능함. 다만, 계약 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② 개정예규 시행 전 이미 총액ES를 받은 계약은 단품 ES 조정이 불가능하다.

■ 개정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

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수조정률에서 공산품 특정규격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 산출례

$$d \frac{D_1}{D_0} \Rightarrow \text{변경} \quad d1 \left( \frac{D_1}{D_{\frac{1}{2}}} - \frac{15}{100} \right) + d2 \frac{D_1}{D_0}$$

-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 D<sub>1/2</sub>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